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1. 17.

다. 상정일자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2.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징수과장 윤민선】

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의 근거법인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 삭제 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 개정과 이에 따른 지방세 과세 체계의 개편으로 개인사업자·법인 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어 ‘주민세 재산분’이 폐지되어 동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납부자 대상 지방세 중 ‘주민세 재산분’을 삭제하고자 하는

것으로, 2021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- 동 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【참고자료】

※ 지방세법 개정 내용(법 74조~84조)

- 주민세 5개 세세목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3개로 단순화함

기 준			개 정		
구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	구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
균등분 (8월)	개인	1만원 内	개인분(8월)	<좌 동>	
	개인사업자	5만원		사업소분 (8월)	사업자
	법인	5~50만원	종업원분		
재산분 (7월)	사업자	연면적 330㎡ 초과: 250원/㎡			
종업원분	사업자	월급여액×0.5%			